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143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5. 8.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정이유

- 가. 지역치안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그동안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주민의 안전보호 등 지역의 선진질서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한계
- 나. 지역치안협의회를 제도화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, 범죄예방, 주민의 안전보호 등 관련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제정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과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
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달성군 지역치안협회의 구성, 해촉, 간사, 회의에 관한 사항
(안 제3조 ~ 제6조)
- 다.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·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,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라. 관계기관 등의 협조 및 지원,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
(안 제8조 ~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경찰법」 제1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(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(3) 규제심사 : 원안 동의

(4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5. 7. 28. ~ 8. 17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(6) 비용추계서 : 생략(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범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,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의회 설치 및 기능) 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협력체계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치안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추진한다.

1. 범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
2. 아동·청소년·여성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
3.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
4. 범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, 대구광역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.
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는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되고, 부의장은 대구달성경찰서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,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1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
2. 대구광역시 달성소방서장

3.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

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,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아동,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
2. 안전예방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회단체 대표자
3. 행정·교육·언론기관 및 그 관계기관 대표자·관계자
4.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자 중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

⑤ 의장, 부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해촉)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,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위원이 사임하였을 경우

제5조(간사)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대구달성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.

② 간사(간사를 맡은 기관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, 주요 처리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
2. 참여기관,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
3.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

4. 회의록 작성

5.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

제6조(회의)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반기별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.

제7조(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)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심의와 협의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참여 기관·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③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8조(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)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참여기관·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·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9조(비밀누설 금지)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(지원)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고 1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지방자치법 제22조(조례)

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경찰법 제16조(치안행정협의회)

- 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(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.
- ②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